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3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4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, 제11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「도로법」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, 제11조)
 - 안 제1조 : 「도로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규정이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나목으로 개정됨(2014. 7. 14)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함.
 - 안 제2조 : 「도로법」 제17조의2 구도에 관한 규정이 「도로법」 제18조로 개정됨(2014. 1.14)에 따라 변경함.
 - 안 제7조 :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적용 법률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 제8조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6조로 변경됨(2008. 3. 28).
 - ※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」에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으로 변경하고, 이 법에서 교통·인구·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서 규정을 신설함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)
 - 제9조 단서 신설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일부 개정 조항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기에 정비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,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조례의 조문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조례의 관련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게 됨.

따라서,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조례의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